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1. . .<br>(제 회) |      |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
시행령 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보건복지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1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·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7172호, 2020.3.31. 제정, 2021.4.1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2조), 추진실적의 평가(안 제3조)

- 1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- 2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

나.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(안 제4조)

- 1)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고독사 실태조

사를 실시한다.

- 2) 고독사율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조사를 실시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음

다. 고독사 예방 협의회(“협의회”)의 구성 및 운영(안 제7조)

- 1)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함
- 2) 협의회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, 고독사 예방 범위에 관한 사항, 고독사의 효과적 예방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조정함
- 3)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1.15.~ 2021.2.24.) 예정

##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

**제 1 조(목적)** 이 영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 3 조(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)**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**제 4 조(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별·나이·학력,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
2. 주거, 생활여건, 건강,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
3. 고독사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고독사 실태 및 고독사 예방 관련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율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.

-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할 때 고독사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, 보호자 또는 유족과 고독사위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고독사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알게 된 자료를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-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,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.

**제 5 조(고독사 통계의 작성 등)**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
- 2. 그 밖에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고독사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.
  - 1.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
  - 2. 설문조사
  -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
**제 6 조(전문 조사·연구 기관의 지정)**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조사·연구 기관(이하 “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통계의 수집·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
2. 통계의 수집·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하고 있을 것
3. 고독사 통계의 수집·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

**제 7 조(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·운영)**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, 교육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경찰청장,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-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, 민간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  1.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 2. 고독사 예방의 범위에 관한 사항
  3. 고독사의 효과적 예방 방법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독

사 예방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⑧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⑨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 8 조(고독사 예방 상담·교육 실시기관)**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1.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
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
5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6.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

## 부 칙

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    | 행 | 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  | 제 1 조(목적) 이 영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신 설> |   | 제 2 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br>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
<신 설>

<신 설>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 조(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)

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 4 조(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

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

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관찰 지역을 대상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별·나이·학력, 혼인 및 취업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
2. 주거, 생활여건, 건강,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
3. 고독사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고독사 실태 및 고독사 예방 관련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율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에 따른 고독

<신 설>

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할 때 고독사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, 보호자 또는 유족과 고독사위험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고독사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고독사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알게 된 자료를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임시조사를 고독사에 관한 전문성, 조사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 5 조(고독사 통계의 작성 등)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
2. 그 밖에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

<신 설>

<신 설>

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
② 고독사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.

1. 통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
2. 설문조사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
제 6 조(전문 조사·연구 기관의 지정)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조사·연구 기관(이하 “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통계의 수집·분석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
2. 통계의 수집·분석 및 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하고 있을 것
3. 고독사 통계의 수집·분석 및 관리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

제7조(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

및 운영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, 교육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경찰청장,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외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, 민간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령 정

<신 설>

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2. 고독사 예방의 범위에 관한 사항

3. 고독사의 효과적 예방 방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⑦ 협의회를 업무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⑧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⑨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 8 조(고독사 예방 상담·교육 실시기관)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<p>이나 단체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</li> <li>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</li> <li>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</li> <li>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</li> <li>5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</li> <li>6. 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·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</li> </ol> <p>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### 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  | (044) 202 - 3893 |